

# 헌 법 재 판 소

## 제3지정재판부

### 결 정

사 건 2020헌마1198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 위헌확인

청 구 인 김명호



피 청 구 인 경기도지사

결 정 일 2020. 9. 29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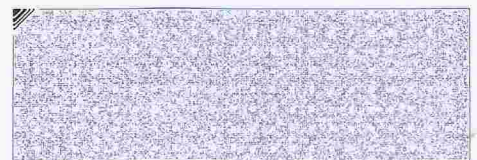
### 주 문

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.

### 이 유

#### 1. 사건개요

청구인은 수원시에 거주하는 사람이다. 피청구인은 2020. 8. 18. 경기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에 대하여 실내에서 원칙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‘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’(경기도 공고 제2020-1581호, 이하 ‘이 사건 행정명령’이라 한다)을 시행하였다.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행정명



령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. 9. 8.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.

## 2. 판단

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한 경우,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,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않은 채 같은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(헌법재판소법 제39조 참조).

청구인이 2020. 8. 26. 이 사건 행정명령에 대하여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나, 헌법재판소는 2020. 9. 1. 이 사건 행정명령은 행정심판 및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데 청구인이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어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였다는 이유로 부적법 각하 결정한 바 있다(헌재 2020. 9. 1. 2020헌마1142).

이 사건 기록상 청구인이 그러한 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바, 이와 같이 적법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않은 채 같은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.

## 3. 결론

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,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
